

# 리걸 클리닉 교육의 발전방안에 관한 소고\* \*\*

박 선 아\*\*\*

## <目 次>

|                                   |   |
|-----------------------------------|---|
| I. 들어가며                           | 3. 리걸 클리닉 교육의 발전을 위한 로스쿨 간 협력방안           |
| II. 리걸 클리닉 교육 10년의 과정과 문제점        | IV. 형사 국선번호 리걸 클리닉 실시방안                   |
| 1. 리걸 클리닉 교육 10년의 과정              | 1. 형사 국선번호를 통한 윤리적 법조인의 양성                |
| 2. 로스쿨 간 교육적 격차의 문제점              | 2. 법원학생실무규칙의 제정을 통한 형사 국선번호 리걸 클리닉 제도의 실시 |
| III. 로스쿨 간 협력을 통한 리걸 클리닉 교육의 발전방안 | V. 결론                                     |
| 1. 로스쿨 간 협력의 필요성                  |   |
| 2. 미국 리걸 클리닉협회(CLEA) 운영의 시사점      |   |

## I. 들어가며

2009년 출범하고 2019년 11년차를 맞이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시도되었던 법학 교육 과제들 중 가장 새롭고 도전적인 것은 리걸 클리닉 교육(임상법학교육, Clinical Legal Education)<sup>1)</sup>이었다고 생각한다. 실제 진행되는 사건을 통하여 살아있는 법학 교육을 지향하는 리걸 클리닉 교육은 기존의 이론 위주의 법학 교육 방법론의 입장에서는 일대 변혁 또

DOI: <http://dx.doi.org/10.18018/HYLR.2019.36.4.215>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18).

\*\* 이 연구는 ‘로스쿨 임상법학교육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2019. 10. 19. 개최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발족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제하고 토론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 변호사, 법학박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sunpark@hanyang.ac.kr)

1) 리걸 클리닉 교육의 개념과 연혁 등 초기 논의에 대해서는 2014년 논문에서 다룬 바 있다. 박선아, 리걸 클리닉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Vol.31 No.1,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219쪽 참조.

는 발상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법학교육 방법론이다. 또한 기존의 법학 교육이 강의 교재 만으로 충분했던 것과 비교하여 리걸 클리닉 교육은 인적, 제도적 조건들이 성숙되어야만 시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비용의 교육 방법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물적 조건까지 요구한다는 점에서 우리 법학 교육의 현실에서는 도전적이고 야심찬 교육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리걸 클리닉 교육은 실무 교육을 넘어 법을 통한 사회봉사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윤리적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갈수록 중요해지는 법조윤리 교육의 측면에서도 매우 매력적이며 법학전문대학원법<sup>2)</sup>에서 지향하는 로스쿨 출범의 취지에도 부합한다.<sup>3)</sup>

그러나 현재 리걸 클리닉 교육은 로스쿨이 직면한 여러 법학 교육의 과제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측면에서 시행착오를 겪어 왔으며, 10년이 지나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변호사시험이라는 당면한 숙제 앞에 무기력하게 유지되고 있다. 현재 전국 로스쿨 중에서 적지 않은 학교들이 리걸 클리닉에 관한 로스쿨 평가기준 상의 최소한의 정량적 기준<sup>4)</sup>조차 충족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한다. 필자 또한 리걸 클리닉 운영의 정상화와 교육목표 달성에 필요한 여러 인적, 재정적 선결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걸 클리닉을 필요 최소한도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결정적으로는 변호사시험 위주의 로스쿨 현실<sup>5)</sup>로 인해 리걸 클리닉 교육이 갈수록 형해화 되어 가고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 
- 2)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참조.
- 3) “흥미로운 것은 초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제도적 공백에 있는 시민들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 중요했으나, 법률구조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제공되고 정부서비스가 확립된 사회에서는 점점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률구조제도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국가로서, 현재의 로스쿨에서의 법학교육은 더욱 법률봉사보다는 교육적 측면이 우선시 된다.” 김주영, 리걸 클리닉 교육의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로스쿨 입상법학교육의 발전방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발족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중 발제문 2019. 10. 19. 참조. 필자 또한 리걸 클리닉 교육의 두 가지 측면, 바로 교육적 목적과 사회봉사의 목적 중에서 교육목적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의 로스쿨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며, 이 논문도 법학교육 방법론으로서 리걸 클리닉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서 작성되었다.
- 4) 리걸 클리닉에 대하여 제1주기 평가기준상으로는 전임실무교수에 의한 운영, 전담 직원의 배치, 운영예산 3천만 원 이상 및 자료집의 발간이 핵심내용이었다면, 제2주기에서 대폭 강화되어 1주기 평가기준에 더하여 송무 실습 실적의 정량적 기준, 법률상담실적의 제출, 송무 기록의 제출 등이 요구되었다. 3주기 평가기준은 2주기 평가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가운데, 송무 실적과 예산규모를 종래 100명이상과 이하로 나누던 것을 좀 더 세분화하여 정량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3주기 평가기준에 대해서 완화된 기준에 대해서 정원이 적은 로스쿨의 경우 이를 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산하한을 낮춤으로써 학내에서 더욱 입지가 좁아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아래에서 리걸 클리닉 평가기준의 문제점과 이증성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1주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2010.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2주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2014. 11.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3주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2019. 11. 참조.
- 5) “경쟁이 교육을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리걸 클리닉의 활성화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며, 더욱이 학생들이 오탈로 인한 사회로부터의 배제에 대한 공포는 교수들이 막연히 느끼는 것 이상이다.” 오현정, 로스쿨

그렇다면 과연 3년이라는 로스쿨 교육 과정 속에서 리걸 클리닉 센터로 집중되는 임상법학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가? 리걸 클리닉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는지, 법률상담과 소송 실적 등의 정량적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 유능하고 윤리적인 법조인 양성에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 현재 로스쿨의 리걸 클리닉은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리걸 클리닉에 필수적인 물적, 인적 기반은 무엇이고 한국 로스쿨의 현실 속에서 그것들을 갖추는 것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리걸 클리닉을 담당할 교수라면 누구나 비슷한 의문과 회의를 품어 왔을 것이다.

이 연구는 리걸 클리닉 교육이 당면한 현실을 해결하고 리걸 클리닉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리걸 클리닉 교육이 걸어온 지난 10년 동안의 과정을 “II. 리걸 클리닉 교육 10년의 과정과 문제점”라는 목차로 개관하면서 리걸 클리닉 교육이 직면한 문제점을 ‘리걸 클리닉 교육의 형해화가 빚은 교육적 격차’라는 측면에서 그 심각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어서 III. 로스쿨 간 협력을 통한 리걸 클리닉 교육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IV. 리걸 클리닉 발전방안 중 제도 개선 과제 중 하나로서 ‘형사 국선 변호 리걸 클리닉제도’의 실시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II. 리걸 클리닉 교육 10년의 과정과 문제점

### 1. 리걸 클리닉 교육 10년의 과정

지난 10년 동안 리걸 클리닉이 걸어온 과정을 4단계, 즉 리걸 클리닉 소개와 도입 논의 단계(2009년 출범 전후), 리걸 클리닉 교육의 제도화 단계(2010년~2015년), 리걸 클리닉에 관한 평가기준의 강화와 로스쿨 간 교육적 격차로 인한 분화의 단계(2016년~2018년), 로스쿨 간 협력의 단계(2019년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단계는 2009년 출범을 전후로 한 리걸 클리닉 교육의 소개와 도입 단계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년 제정)은 ‘법정보의 조사(Legal Research)’, ‘법문서의 작성(Legal Writing)’, ‘법조윤리(Legal Ethics)’, ‘모의재판(Moot Court)’ 및 ‘실습 과정(Externship)’ 만을 필수 실무 교과목으로 하고, 리걸 클리닉은 실무 교과목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로스쿨 출범 시기에 리걸 클리닉에 관한 논의들이 없었던 것은 아

---

임상법학교육의 발전방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발족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문2019. 10. 19. 25쪽 참조.

니다. 오히려 로스쿨 출범 시기에 미국식 로스쿨의 중요한 특징이었던 리걸 클리닉에 대한 연구와 소개가 더욱 활발하였다.<sup>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출범 시기에 리걸 클리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는 등 제도화하지 못했던 원인은, 연구와 논의의 부족, 교육주체의 부족 및 비용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고 추측된다.<sup>7)8)</sup>

2단계는 2010년경부터 2015년까지의 제도화 단계이다. 2010년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는 비로소 제1주기 로스쿨 인증 평가기준에 리걸 클리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리걸 클리닉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였다.<sup>9)</sup> 2012년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고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sup>10)</sup> 리걸 클리닉 운영을 위한 비용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됨으로써 최소한의 재정적 기반이 용이하게 갖추어졌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으나 2011년경부터 전국 로스쿨들은 1주기 평가를 준비하면서 리걸 클리닉 교육을 대부분 시작하게 되었고, 최소한 2014년부터는 전국 25개 로스쿨 모두가 본격적으로 리걸 클리닉 교육을 실시하였다.<sup>11)</sup> 국고지원금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간 지급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를 통하여 차등 지급하였으며 대략 연 10억 원이 지급되었다. 국고지원금은 로스쿨마다 재정능력이 차이가 나는 가운데 로스쿨 평가기준에서 리걸 클리닉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함에 따른 국가적 보조였으며, 전국 모든 로스쿨의 리걸 클리닉이 빠른 시간 내에 최소한의 형태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sup>12)</sup> 아울러 국고지원금까지 지급한다는 점에서 대학 내에서 리걸 클리닉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6) 2009년 출범 전후로 한 리걸 클리닉에 관한 주요 연구로는 “문재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임상교육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제29집, 한국의국어대학교, 2008. ; 박찬운, 한국의 로스쿨 임상법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법학논총 제24집 제3호(Vol.24 No.3),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이종근, 법학전문대학원의 현 단계를 점검한다 ;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 연구 : 미국의 경험으로부터의 참고, 법과 사회, 제36권, 창작과 비평사, 2009 등”이 있다.

7) 박선아, 리걸 클리닉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Vol.31 No.1,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221쪽.

8) 리걸 클리닉은 로스쿨 설치인가기준에서도 제외되었다. 김자영, 백경희,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리걸 클리닉에서의 국선변호활동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 Vol.27 No.4, 2016. 참조.

9)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는 평가항목 7.에서 ‘교육연구 지원기준’에 7.5. 리걸 클리닉 지원을 포함시켰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2010. 7, 147-151쪽 참조.

1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13조의 ②항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 제5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근거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역량강화(리걸 클리닉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실시되었다.

11) 법학전문대학원 이전에도 다수의 대학들이 지역 공헌사업의 일환 또는 여러 목적으로 대학 내에 법률상담소를 운영하여 왔는데, 이 시기에 대학들은 1주기 평가기준에 맞추어 기존 법률상담소의 명칭과 조직을 바꾸어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12) 리걸 클리닉의 예산기준은 연간 3천만 원 이상이었으나, 2010년 당시 연간 3천만 원 이상 리걸 클리닉 예산을 운용하는 로스쿨은 거의 없었다. 2012년부터는 2015년까지 정부보조금(2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되었다.

3단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로스쿨 평가기준 상의 리걸 클리닉 교육 기준의 강화라고 볼 수 있다. 2014년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는 제2주기 평가기준(2018년 평가 실시, 평가 기간 2013-2017학년도)을 확정하였다. 1주기 평가기준과 비교하여 2주기 평가기준의 가장 큰 변화는 실무교과목의 정형성과 내실화를 위한 기준 강화였다. 리걸 클리닉에 대해서도 실무교과목으로서 예외 없이 ‘리걸 클리닉을 통한 실무교육 강화’와 ‘윤리적인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해 각 로스쿨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정도로 엄격한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2주기(2013-2017) 평가기준은 리걸 클리닉에 대하여 실무 교과목 분야, 교육 지원 분야, 사회봉사 분야 및 교육성과 분야 등 4가지 측면에서 종합적 평가를 하였다. 리걸 클리닉의 경우 필수실무과목은 아니지만 센터의 운영, 리걸 클리닉에 대한 지원, 송무 사건과 법률상담실적에 대한 평가 및 정원 대비 참여인원의 하한 설정 등을 인해 사실상 준 필수 실무과목 중의 하나가 되었다.<sup>13)</sup>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는 전국의 리걸 클리닉은 초기의 도입과 제도화의 단계를 벗어나 리걸 클리닉 교과목과 센터의 운영이 정착되어 가는 로스쿨과 강화된 2주기 평가기준의 하한 충족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 나누게 된다. 특히 2016년 국고지원금마저 폐지된 이후로는 형해화의 길을 걷는 로스쿨로 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교육의 내실화와 각 로스쿨에 적합한 리걸 클리닉을 운영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발전되어 가기보다는 정량적 평가기준에만 더욱 치중하는 현실이다. 게다가 갈수록 변호사시험으로 집중된 로스쿨 분위기에서, 리걸 클리닉에 관심이 있었던 교수들조차도 예산 확보, 임상교수나 변호사초빙, 교육과정개선 등과 같은 리걸 클리닉 이슈들을 학교의 주요 의제로 던지지 못하고 기초생계만 유지하는 것이나 다름없이 운영하기도 한다.

특히 2016년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 이후로는 이런 현상이 더욱 현저하다. 리걸 클리닉에 관한 2주기 평가기준의 특징 중 하나인 정량적 요소 중 하나인 송무 실습 실적의 경우 필수적으로 사건 당 일정 금액 이상의 송무 비용의 투입이 필요하다. 정부예산이 지급되었

13) 2주기 평가기준 중 리걸 클리닉에 대한 주요 평가항목은 교육과정 영역 중 ‘3.6. 리걸 클리닉 등의 개설과 운영의 내실화’ 및 교육환경영역 중 교육여건 항목으로서 ‘4.2.3. 리걸 클리닉 지원’이다. 3.6. ‘개설과 운영의 내실화’에서는 ① 리걸 클리닉 과정 개설 여부, ② 실제 사건을 다루고 실제사건 처리의 실질적 운영여부, ③ 피드백 시스템을 활용한 실질적지도 여부를 평가한다. 공익성 항목(3.6.3.)에서는 ① 실무교육목적 달성 적합성 여부, ② 사회봉사기회 제공 적합성, ③ 매년 입학정원대비 30% 이상 참여 여부를 평가요소로 본다. 또한 ‘4.2.3. 리걸 클리닉 지원’에서는 운영 규정 제정 여부, 운영 예산 확보 여부(입학정원 100명 이상 연 3천만 원 이상, 100명 미만 연 2천만 원 이상), 송무 실습 실적(입학정원 100명 이상 연 8건 이상, 100명 미만 연 5건 이상) 및 법률상담 실적의 제출, 자료집 발간 여부(연 1회 이상) 등을 정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2주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2014. 11. 참조.

던 시기에 확정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2016년 정부 예산이 폐지된 이후로는 재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생겨났다. 많은 학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가운데 2017년 하반기에 전국 로스쿨 리걸 클리닉 센터는 예정대로 2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기준에 따라 교육의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이 시기에는 실무 교과목으로서 리걸 클리닉에 대하여 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준 강화와 엄격한 학사관리를 주문하면서도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과 지원은 전혀 개선되지 못한 이중성을 보여준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4단계는 올해 2019년 로스쿨 리걸 클리닉 센터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 센터 등이 결합한 전국적 연대체 조직을 계기로 한 로스쿨 간 협력의 시기이다. 지난 2019. 5. 서울지역 리걸 클리닉 센터장들은 리걸 클리닉이 공통으로 직면한 어려움들을 공유하면서 서울지역 리걸클리닉센터협의회를 발족한 것에 이어서 2019. 10. 19.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Korea Clinicla Legal Education Association, KCLEA)’<sup>14)</sup>를 설립하였다. 설립과 동시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와 함께 ‘로스쿨 임상법학교육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진 바 있으며, 이로써 로스쿨 간 협력을 통한 임상법학 교육의 활성화에 첫 걸음을 내딛었다.<sup>15)</sup> 리걸 클리닉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내에서 리걸 클리닉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선결요소이다.<sup>16)</sup> 서울대의 경우 2019년부터 리걸 클리닉의 활성화가 로스쿨 개혁이라는 신념에 기하여 서울대 리걸 클리닉센터를 공익법률센터로 대폭 확대 개편하여 전국 리걸 클리닉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sup>17)</sup>

14)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Korea Clinicla Legal Education Association, KCLEA) 정관 제1조(목적) “이 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임상법학(리걸 클리닉) 교육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지식 및 능력을 갖춘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임상법학(리걸 클리닉)교육 제도 및 교육방법론에 대한 연구 2.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 담당기관간 협력 3. 임상교육 종사자간 지식 및 정보 교환 및 상호 교류 4.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임상법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활동 5. 임상교원의 양성 및 교육 6. 임상법학 관련 교재 및 자료의 발간 및 보급 7.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및 해외 임상법학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제휴 8. 기타 필요한 사항”

15) ‘서울 12개 로스쿨 교수들, 리걸 클리닉협의회 발족’, 법률신문 2019. 5. 18. [www.lawtimes.co.kr](http://www.lawtimes.co.kr) ‘한국리걸 클리닉협의회 출범’ 법률신문 2019. 10. 22. <https://www.lawtimes.co.kr>

16) 서울대학교 장승화 원장은 공익법률센터 발족 기념 심포지엄에서 “법조인 양성의 역할이 과거 도제식 시스템에서 로스쿨 등 고등교육기관의 영역을 옮겨오는 것은 전세계적인 경향이며 이에 따라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 특히 실제 사건을 통해 법학을 배우는 임상법학을 비롯한 경험적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것 또한 전세계적인 흐름에 해당한다”(로스쿨 임상법학교육의 발전방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발족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2019. 10. 19. 참조)고 하면서 임상법학교육 활성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과단성있는 투자를 실천하고 있는데, 리걸 클리닉의 발전은 대학 집행부의 확고한 신념과 지지가 있는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7) 이러한 서울대의 시도에 대하여 초대 센터장으로 초빙된 김주영 객원교수는 “로스쿨의 법조인 양성의

앞으로 해외 리걸클리닉협회의 경험에 대한 연구와 해외협회와의 교류를 통해 교수 역량 및 클리닉협회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교육적 교류가 많은 미국, 중국, 일본에는 미국(CLEA)<sup>18)</sup>, 중국(診所法律教育專業委員會, Clinical Legal Education in China)<sup>19)</sup>, 일본(JCLEA) 등 리걸 클리닉 단체가 이미 결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특히 미국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여러 이상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중국 또한 미국 포드재단의 편당으로 깜짝 놀랄 정도로 리걸 클리닉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일본 로스쿨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임상법학 교육은 우리보다 발전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역할을 임상법학회가 맡고 있다.<sup>20)</sup> 우리도 이제 그 출발에 와 있다.

## 2. 로스쿨 간 교육적 격차의 문제점

2011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교재개발과제로서 ‘로스쿨 실습과정’을 발간하였고<sup>21)</sup>, 2014년에는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제시하고자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sup>22)</sup> 그러나 연구에만 그치고 이를 각 대학과 협력하여 실천하고 각 대학의 상황에 맞게 이를 이식하는 적극적인 과정은 전혀 없었다. 그 사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6년 국고지원금 폐지 이후로는 로스쿨 교육이 형해화되고 로스쿨 간 교육적 격차가 현저해졌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갔다. 전국 로스쿨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은 국공립과 사립의 차이만 있을 뿐 서로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리걸 클리닉 교육은 그 어떤 교육 과정보다 교육내용과 수업의 질에 있어서 학교 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로스쿨이 리걸 클리닉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로스쿨의 임상법학 교육이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 임상법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서울대학교는 공익법률분야

---

역할을 폼뻗하고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과거 도제식 제도의 장점에 사로잡힌 것으로 생각된다. 법조인양성이 로스쿨 등 교육기관의 영역으로 옮겨오는 세계적 흐름이며, 실무교육뿐만 아니라 로스쿨 교육의 방점이 실제사건을 통한 교육, 즉 경험적인 임상법학교육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 해외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 또한 리걸 클리닉교육의 활성화는 법학교육의 품격을 높이고 법조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는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으로도 볼 수 있다.” 김주영, 리걸 클리닉 교육의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로스쿨 임상법학교육의 발전방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발족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중 발제문 2019. 10. 19.

18) 미국CLEA(<https://www.cleaweb.org/>)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19) 中国诊所法律教育网 [www.cliniclaw.cn](http://www.cliniclaw.cn)

20) 박선아, 리걸 클리닉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Vol.31 No.1,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236쪽 재인용.

21) 문재완, 정한중, 김인회, 로스쿨 실습과정, 한국학술정보, 2011.

22) 이종근, 이정훈, 문재완, 리걸 클리닉 표준모델 개발연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4.

에서 명성 있는 두 분을 국내 최초로 임상교수로 초빙하고, 지도변호사 2인과 함께 변호사 4인으로 구성된 공익법률센터를 열었다.<sup>23)</sup> 이러한 첫 걸음은 리걸 클리닉뿐만 아니라 로스쿨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보이다. 그러나 다수의 학교는 초기의 시도들이 좌절하고 더욱 어려워진 학교 내외의 환경 속에서 초심마저 잃은 상태로 리걸 클리닉 센터장 1인 또는 소수의 교수들의 노력으로 어렵사리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sup>24)</sup> 리걸 클리닉 교육의 교육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제도적 개선과 상호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제들이 이제 막 출범한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를 통한 로스쿨 간 협력방안이 될 것이다. 새로운 교육방법론의 시도, 인적, 물적 기반의 필요성, 더욱이 변호사시험과의 싸움 등 이겨내야 할 장애물들이 너무 많다. 이것은 개별 학교 또는 교수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의 규모와 재정 등 여러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학교가 있기 마련이다. ‘한국리걸 클리닉협의회’ 발족은 우리나라 리걸 클리닉이 상호 연대와 협력을 통해 로스쿨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윤리의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미래법조인 양성의 길을 열어가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 III. 로스쿨 간 협력을 통한 리걸 클리닉 교육의 발전방안

#### 1. 로스쿨 간 협력의 필요성

여전히 낮은 리걸 클리닉에 대한 이해가 로스쿨에서의 리걸 클리닉의 변화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리걸 클리닉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는지, 이념적인 측면에서 많은 토론을 통해서 우리 사회와 로스쿨에 적합한 리걸 클리닉의 지향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각 로스쿨에서 리걸 클리닉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고충 중 하나는 학내에서 리걸 클리닉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고 함께 행동할 동료교수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수의 로스쿨들이 마치 외로운 섬처럼 홀로 클리닉을 담당하거나 실무교수들이 기간을 정하여 순차로 담당하기 때문에 협업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리걸 클리닉 교육의 활성화는

23)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본격 출범’ 한국대학신문, 2019. 8. 28.

24) 전국 25개 리걸 클리닉의 운영 현황을 하나로 모은 종합적인 연구보고서가 발간된 적은 없다. 특히 2016년 국고지원금이 폐지된 이후로는 실무교육 역량강화(리걸 클리닉지원)사업 우수사례 보고서도 발간되지 않았다. 빠른 시일 내에 2주기 평가보고서 중 리걸 클리닉에 관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종합적인 리걸 클리닉 현황 보고서의 발간을 제안한다. 2013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 역량강화(리걸 클리닉 지원)사업 우수사례 보고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4. 3. 및 2014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 역량강화(리걸 클리닉 지원)사업 우수사례 보고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5. 3. 참조.



개별 대학 또는 개별 교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로스쿨 간 협력을 통해서만 발전방안을 찾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10년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앞으로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를 통하여 각 로스쿨의 리걸 클리닉 교원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 교류와 세미나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리걸클리닉협의회와는 별도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리걸 클리닉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우선 로스쿨 간 협력을 통한 리걸 클리닉 발전방안을 찾기 위해 미국 리걸 클리닉협의회 운영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 적절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미국 리걸 클리닉협의회의 운영을 소개하고, 로스쿨 간 협력방안으로 제시되는 주요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 2. 미국 리걸 클리닉협의회(CLEA) 운영의 시사점

미국변호사협회(ABA)는 1996년 로스쿨 인가기준을 개정하여 ‘무료법률봉사참여기회 제공’을 추가하였고<sup>25)</sup>, 로스쿨협의회(AALS)에도 Commission on Pro Bono and Public Service Opportunities가 설치된 바 있다. 또한 로스쿨의 리걸 클리닉 교수들은 2002년 리걸 클리닉 협회(CLEA, clinical legal education association)을 결성하였다.<sup>26)</sup> 미국 CLEA는 미국 150 개 이상의 로스쿨 교수들로 이루어진 미국 최대의 법학교수 단체로서 1000명 이상의 회비 납부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미국 CLEA는 법률가 교육의 기초로서 리걸 클리닉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임상교육자를 양성하고 임상교육을 통합하며 개선하고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5가지의 책무(Mission)를 제시하고 있다.<sup>27)</sup> 기본적인 5가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계획을 5가지 목표로 다시 나누어 각각 실행항목, 기간, 주요 참가자 및 성공 측정요소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제시하고 있다. 5가지의 전략적인 계획은 변호활동의 증대(연구위원회의 설치, 미국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을 통한 제도적 개

25) 미국변호사협회 로스쿨 승인절차기준의 CURRICULUM (b)에서 “A law school shall provide substantial opportunities to students for:(1) law clinics or field placement(s); and (2) student participation in pro bono legal services, including law-related public service activities.” ‘ABA Standards and Rules of Procedure for Approval of Law Schools 2019-2020) Standard 303.’ 참조.

26) 펜실베이니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정관상으로는 2002년 현재의 정관이 처음으로 채택되었으며 5차에 걸쳐 수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7) CLEA STRATEGIC PLAN - 2016는 CLEA 법률가 교육의 기초로서 리걸 클리닉교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5가지의 책무(Mission)를 제시하고 있다. “(1)양성 : 임상교육자에 의한 우수한 교육과 학문으로의 양성, (2)통합 : 임상 교육을 통합하고 그 방법을 로스쿨 법률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장, (3)개혁 : 우수하고 경험적이며 회고적인 법률 실무교육으로 개혁, (4)개선 : 임상 법학교육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 개선, (5)추구와 증진 : 법률가의 핵심가치로서 정의와 다양성을 추구하고 증진.” <https://www.cleawe.org/> 참조.

선과제), 소통의 증대(지역 연락사무소의 설치, 회원조사의 실시를 통한 회원과 사무국 규정의 개선), 클리닉 교육에 필요한 주요 요소의 제공(교육방법개발, 신규교수에게 정보제공), 정의와 다양성의 추구하고 증진(사회정의 이슈위원회의 설치 등), 사무국과 재정 문제 등이다.<sup>28)</sup> 미국 CLEA는 각 주법이나 주 변호사협회의 정책이 CLEA의 활동이나 리걸 클리닉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률 제정이나 관련 정책의 집행을 저지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운동도 함께 하고 있다.<sup>29)30)</sup> 또한 미국의 리걸 클리닉협회(CLEA)는 클리닉센터의 건물 또는 공간을 건축하거나 리노베이션하는 경우 어떻게 계획하고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까지 제공할 정도로 활발하다.<sup>31)</sup>

### 3. 리걸 클리닉 교육의 발전을 위한 로스쿨 간 협력방안

‘한국리걸클리닉협회’는 로스쿨 간 협력을 통하여 리걸 클리닉 발전 방안을 찾고자 결성되었으며 조직 과정에서 수많은 당면한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필자는 교육과정의 측면, 인적 기반의 측면, 물적 기반의 측면, 법과 제도 개선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제시해보고자 한다.<sup>32)</sup>

#### (1)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

리걸 클리닉 발전방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이 교육과정 개선이라고 생각한다. 교과목으로의 리걸 클리닉의 안정화와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비로소 교육중심의 리걸 클리닉을 지향할 수 있다.<sup>33)34)</sup> 물론 리걸 클리닉의 비영리적인 특성상 공익프로그램의 비중이 높기 마련이

28) CLEA STRATEGIC PLAN - 2016. <https://www.cleaweb.org/>

29) THE ATTACK ON THE UNIVERSITY OF MARYLAND LAW SCHOOL CLINICS, March 27, 2010. <https://www.cleaweb.org/>

30) CLINICAL LEGAL EDUCATION ASSOCIATION (CLEA) COMMENT TO ABA TASK FORCE ON THE FUTURE OF LEGAL EDUCATION June 19, 2013. <https://www.cleaweb.org/>

31) CLINICAL LEGAL EDUCATION FACILITIES: GUIDE TO BUILDING OR RENOVATING CLINICAL SPACE, May 15, 2001. <https://www.cleaweb.org/>

32)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장 김주영 교수는 리걸 클리닉의 구성요소를 교원, 학생, 실제 사건 등 3요소로 나누어, 각 요소의 측면에서 미국의 리걸 클리닉의 환경과 한국의 리걸 클리닉의 환경을 비교하면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주영, 리걸 클리닉 교육의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로스쿨 임상 법학교육의 발전방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발족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중 발제문 2019. 10. 19. 13~15면 참조.

33) “다양한 법률구조(legal aid)제도의 정착으로 공공봉사 측면에서의 리걸 클리닉 수요가 축소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김주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발족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중 발제문 2019. 10. 19. 참조.

지만, 공익분야에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클리닉의 발굴,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에 맞는 클리닉 개설이 필요하다. 교육과정개선을 위한 세부과제는 우선 리걸 클리닉 교육방법론의 개발, 교과목 편성 의무화, 다양한 리걸 클리닉 교과목 편성, 이수 학점 상향 등 교과목으로서의 리걸 클리닉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리걸 클리닉 평가기준은 교과목으로 리걸 클리닉의 개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과목으로 개설하지 않고 단지 졸업필수조건 법률상담시수의 충족이나 공익활동 프로그램 실시만으로 리걸 클리닉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다. 특히 교과목으로의 리걸 클리닉을 1,2학기 모두 안정적으로 개설하고 다양한 클리닉을 개설하여 리걸 클리닉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에 졸업학점 중 최대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상향할 필요가 있고, 평가방식을 P/F가 아닌 등급평가로 전환하되 단 절대평가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35)</s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리걸 클리닉 교육방법론 개발에 관하여는 2011년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교재개발과제로 “로스쿨 실습과정”<sup>36)</sup>이라는 제목의 리걸 클리닉 교재를 출판된 바 있고, 2014년에는 “리걸 클리닉 표준모델 개발연구”<sup>37)</sup>가 발간되었다. 리걸 클리닉 제도화 초반에 있었던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지 못했던 원인 중의 하나는 리걸 클리닉 교육에 투입되어야 하는 인적, 물적 요소들,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제도적 장애물들은 어느 하나의 로스쿨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리걸 클리닉에 적합한 사회적 이슈를 발굴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교육적 범위가 개별 로스쿨에만 그친다면 행정적인 준비에 투입되는 노력에 비해서 양적인 교육효과가 너무 적기 때문에 쉽게 동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성과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함께 시정해감으로써 리걸 클리닉 교육방법론을 전국 로스쿨에 퍼트리는 역할을 리걸 클리닉협회가 주도적으로 하여야 한다.<sup>38)</sup> 아울러 교육적 성과들이 축적될 수 있도록 리걸 클리닉협회에

34) 미국 하버드 로스쿨 국제 인턴 리걸 클리닉 fellow로 일한 경험이 있는 송지우 교수는 “리걸 클리닉의 발전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의뢰인에 대한 의무와 학생의 발전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시혜성에 대한 자기경계와 같은 리걸 에이드의 위험성에 대한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송지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발족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중 토론문 2019. 10. 19. 참조.

35) 한양대의 경우 리걸 클리닉이 1,2학기 모두 개설되어 있으나, 과목코드가 같아서 공익변호사를 꿈꾸거나 리걸 클리닉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3년 동안 단지 한 학기에 3시간 2학점 밖에 이수할 수 없다. 2학기 이상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리걸 클리닉 1,2로 교과과정개선을 요구하였으나 학내에서 리걸 클리닉의 중요성과 활성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따르지 못하여 부결되는 과정을 겪었다. 더욱이 최근 로스쿨들이 직면한 수강인원부족으로 인한 선택과목 폐가의 문제와 연동되어 깊이 있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더욱 요원한 과제가 되었다.

36) 문제완, 정한중, 김인회, 로스쿨 실습과정, 한국학술정보, 2011.

37) 이종근, 이정훈, 문제완, 리걸 클리닉 표준모델 개발연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4.

38) 성균관대의 조정클리닉의 경우 이미 우수사례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바, 리걸 클리닉협회를 통하여 전

서 ‘임상법학 잡지(Clinical Law Review)’를 빠른 시기에 출판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인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협력방안

리걸 클리닉 담당교수들은 클리닉과목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다른 교과목을 담당한다. 리걸 클리닉에서 교수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최대 10명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실무교원이 전임 또는 겸임의 형태로 참여를 필요로 한다. 현실적으로 전임 실무교원이 협력하여 리걸 클리닉을 운영하는 사례는 교수사회의 분위기상 흔치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상 겸임교수 또는 지도변호사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방변호사회 및 프로보노 센터, 공익인권 법률사무소와의 협력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리걸 클리닉 겸임교수 또는 지도변호사로 초빙함으로써 교육 지원을 받고, 변호사회와 공익법률사무소의 공익변호사들이 개발하고 연구한 기획소송이 될 만한 이슈와 노하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현재와 같은 진입이 어려운 법률시장에서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지도를 위한 방향으로 리걸 클리닉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공익변호사그룹의 변호사나 다양한 직역의 변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물론 리걸 클리닉의 인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상교수 또는 지도변호사를 초빙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현재 임상교수를 초빙한 곳은 서울대가 유일하고 지도변호사를 채용한 곳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까운 시기에 리걸 클리닉 평가기준에 모든 로스쿨이 전임 임상교수나 전임 지도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수의 채용으로 인적 기반의 측면이 모두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될 것이고 인적 기반이 축적되기 위해서는 임상교육자의 양성과 지원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리걸 클리닉 발전을 위한 교수역량강화의 측면이나 임상법학교수법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임상법학을 공익적이고 구조적인 성격의 사건을 통해 실무를 초보적으로 경험하게 하면 충분하다는 낮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그러나 임상법학에 참여한 교수라면 누구나 임상법학교수법이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주제일 뿐만 아니라 매 학기, 매 사건마다 업데이트가 필요하여 시간과 준

국 로스쿨에 교육방법론을 전수하여 프로그램을 널리 퍼트리기 위한 노력들이 이미 진행 중이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방학 중 리걸 클리닉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국 리걸 클리닉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준비 중에 있다. 이해완, 성균관대 조정클리닉 사례, 로스쿨 임상법학교육의 발전방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발족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발제문, 2019. 10. 19. 참조.

비의 부족함을 느낀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종래의 국고지원 리걸 클리닉 역량강화사업이 실패했던 원인 중의 하나가 교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살펴 본 미국 리걸 클리닉협회의는 5가지 기본 책무 중 제 1책무로서 임상교육자의 양성을 들고 있다. 우리도 이제 임상법학 담당 교수의 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 (3) 물질 기반을 갖추기 위한 협력방안

리걸 클리닉 교육은 기존 이론 위주의 강의식 교육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고비용의 교육 방법론이다. 리걸 클리닉은 원칙적으로 비영리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학당국은 재정적으로 부담을 갖게 되는데, 학교가 리걸 클리닉에 많은 재정을 투입할 유인을 찾기도 어렵고, 일정 부분 비용을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재정적 역량으로는 충분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리걸 클리닉에 대한 정부나 사회적 차원의 지원만이 리걸 클리닉의 재정문제의 해결책이 된다고 본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도 1960년대부터 리걸 클리닉 교육이 급격히 발전된 것은 사회적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포드재단(The Ford Foundation)은 1978년까지 ‘The Council on Legal Education for Professional Responsibility, Inc.’(CLEPR)와 연계하여 리걸 클리닉 지원금으로 1,200만 달러를 지출하였다. 1978년경 포드재단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미국 정부가 1997년까지 재정지원을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국가적 재정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각 로스쿨이 임상법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임상교수(Clinical Professor of Law)를 채용하였으며, 리걸 클리닉이 획기적으로 정착, 성장하고 임상법학 교육 방법론이 학문적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사실 대부분의 과제와 협력방안은 재정적인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12-2016년 동안 국고지원금이 있었지만 금액적인 한계, 사용용도의 한계 및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해 국가보조금 지원을 출발점으로 하여 다음 단계의 성장을 하는 단계로 이어지지 못한 점이 있었다. 그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재정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와 협력이 시급하다.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정부나 기업, 공동체 등을 설득하여야 할까? 폐지된 국가보조금의 복원과 기업후원금 등 펀딩문제를 위한 공동노력은 어떻게 로드맵을 짜야 할까? 그 외에도 안정적인 재정적 투자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고안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불과 몇 천만 원에 불과하겠으나, 우선 학교의 리걸 클리닉 예산의 일정액을 협회의의 협조를 받아서 지원받아서 리걸 클리닉협회의의 예산으로 사용하여 초기 협력기금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2020년부터는 반드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리걸 클리닉은 독

자적으로 원칙적이 비영리성은 유지하면서도 후원금과 승소로 인한 소송비용 충당 등을 통하여 전체 예산 중 일정한 비율로 수입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리걸 클리닉마다 독자적인 기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sup>39)</sup>

#### (4) 제도개선을 위한 협력방안<sup>40)</sup> : 법과 제도의 이중성의 극복

지난 10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만 몰입하여 실무교육에 대한 법과 제도의 정비는 소홀히 하였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는 1주기에서 2주기를 지나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리걸 클리닉 운영의 내실화를 평가하였지만, 정작 리걸 클리닉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과 제도 개선 과제는 단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리걸 클리닉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 중의 하나로 법조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원, 검찰에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한 초기 상담이나 민, 형사 조정 절차, 국선번호 등을 리걸 클리닉의 활동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법이다. 법원, 검찰로서도 우수한 학생들의 법률봉사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법률서비스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sup>41)</sup> 그러나 법조유관 기관과의 체계는 다른 공익프로그램과는 달리 법과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고, 로스쿨 간 협력을 통해서 더욱 철저하게 연구되고 공신력 있게 제안되어야 성과가 날 수 있다. 법과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로스쿨 간 협력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제도적 개선과제로서 종래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서는 전임교수의 임상교육목적 변호사업무 허용여부에 관한 문제가 있다. 현재 로스쿨 전임교원은 모든 실무 활동이 금지되고 변호사 휴업이 강제되고 있다. 로스쿨 출범 당시부터 이어져오는 이러한 관행은 우선 「변호사법」 제38조(검직 제한)<sup>42)</sup>,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및 국가공무원법

39) 운영비용 외에 손해보험비용, 소송비용 등의 부담에 대한 추가논의는 박선아, 리걸 클리닉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Vol.31 No.1,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40) 리걸 클리닉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또한 인적 측면과 물적 측면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필자는 2014년 리걸 클리닉 제도화 시기 초기에 리걸 클리닉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들 중에서는 실무전임교원의 변호사 업무의 제한적 허용과 학생들을 위한 실무수습규칙 등 입법적 문제, 공익전담 법률사무소를 허용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 문제와 대학 내 법무법인 설립의 문제 등을 인적, 물적 측면으로 나누어 주장한 바 있다. 박선아, 리걸 클리닉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Vol.31 No.1,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41) 앞서 소개했던 성균관대 로스쿨의 조정클리닉의 경우 법원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리걸 클리닉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과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해완, 성균관대 조정클리닉 사례, 로스쿨 임상법학교육의 발전방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발족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발제문, 2019. 10. 19.

제64조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sup>43)</sup>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영리적인 행위를 금하는 변호사법상의 겸직 제한 업무에 교육과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로스쿨의 교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 가능하고, 사립학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도 만약 임상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업무의 제한적 허용은 교원의 복무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선해할 수 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교원)규정에는 실무교수의 변호사 겸직 금지를 규정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변호사 휴업이 강제되었던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및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람을 법조실무 경력교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거나 변호사 휴업을 인가신청서 제출 이전에 휴업할 것을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현재 모든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휴업 상태로서 임상교육을 포함한 일체의 실무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전임교원의 실무활동을 금지하는 제도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관심 국가들과 비교하여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실무교육의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현행 평가기준은 실무과목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학생들이 실제사건의 법률상담 등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현장체험을 통해 실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과 연계한 현장학습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사회봉사사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현장 학습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고, 리걸 클리닉 과목 담당교원이나 변호사 등의 지도하에 리걸 클리닉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지, 민·형사 등 실제 사건을 가지고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체험하는 데 적합하도록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sup>44)</sup>. 이처럼 평가기준은 학생들이 실제사건을 통해 실무 능력을 습득하는 과정을 운영할 것과 그 책임자로 전임교원인 법조실무교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클리닉 운영을 위해 개업 상태를 유지하며 관련 사건을 수임한 교원을 법조실무교원에서 제외하는 해석은 모순이라 할 것임니다.

임상교육을 위한 실무활동의 전면적 차단으로 말미암아 학교로 이직한 실무자들은 최근 실무에 점점 무지해져가고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 물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 변호사법,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및 법학

42) 변호사법 제38조(겸직 제한)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생략)”

43) 그 외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제26조(겸직 허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칙」, 「서울지방변호사회 겸직허가 및 신고규정」 및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44)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3주기 개정), 68-73면 참조.

전문대학원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보다 분명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임상 법학교육을 위한 변호사업무의 제한적 허용’의 근거규정을 두는 법률 개정이 바람직하다.

한편 제도적 개선과제로서 형사 국선변호 리걸 클리닉 제도가 2016년 법원행정처에서 입안하여 추진된 바 있다. 형사 국선변호사 리걸 클리닉의 운영 또한 만약 위와 같은 변호사법 등의 법률의 개정이 있다면 자유롭게 허용될 것이다. 그러나 형사 국선변호의 경우 로스쿨 교수 또는 학생들에게 교육적 목적에 한하여 국선변호인의 지정제도를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굳이 변호사법 등의 개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미국 처럼 법원학생실무수습규칙이 제정된다면 리걸 클리닉센터를 통하여 교수와 학생들이 형사 국선변호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봉사하면서 형사실무를 익히는 유용한 제도로 기능할 것으로 본다. 현행법 하에서 충분히 실시 가능한 형사 국선변호제도 및 법원학생실무수습규칙의 제정에 관해서는 목차를 달리하여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한다.

#### IV. 형사 국선변호 리걸 클리닉 실시방안

##### 1. 형사 국선변호를 통한 윤리적 법조인의 양성

리걸 클리닉에서의 형사 국선변호를 실시할 수만 있다면 형사사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변호사의 전통적 역할을 익히고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새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2016년 9월 13일 법원행정처는 로스쿨 학생의 형사 국선변호 참여제도를 마련하였으나 실시되지 못하고 좌절되었다. 당시 법원행정처의 방안은 지나치게 실무교수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주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실무교수가 변호사 휴업을 풀고 새로 개업을 하여 학교로 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변호사협회에 개업신고를 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실무교수 또는 리걸 클리닉 전담교수들은 각 학교에서 실무교수들을 위한 별도의 승진, 승급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교수들과 동일한 연구실적을 필요로 하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사무직원도 제공받지 못하는 가운데 법률사무소를 개업해야만 국선변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등 여러모로 문제점이 많았다.<sup>45)</sup> 앞으로 종전의 방안을 수정하여 장기적인 과제로 진행되어 학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로스쿨 학생을 위한 형사변호실무규칙과 같은 새로운 규정이 마련된다면 학생들의 형사 국선변호 활동을 제공하기 위

<sup>45)</sup> 같은 의견으로는 김자영, 백경희,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리걸 클리닉에서의 국선변호활동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 Vol.27 No.4, 2016. 참조.



해서 이를 신청하는 학교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국리걸클리닉협회’를 통하여 제도에 대한 의견을 법원과 국회에 제시하고 천천히 준비한다면 우리 교육현실에서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종래 사법연수원생에게 부여되었던 형사 국선변호 활동을 통한 형사실무 실습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형사 국선변호인의 사회적 사명과 역할을 생각 할 때 윤리적 법조인의 양성을 위한 교육방법으로도 형사 국선변호 리걸 클리닉을 빠른 시기 내에 제도화하여야 한다.

## 2. 법원 학생실무규칙의 제정을 통한 형사 국선변호 리걸 클리닉 제도의 실시

미국 리걸 클리닉이 현재처럼 활성화된 것은 사회적, 국가적 재정 지원 이외에도 법원과 변호사협회가 학생들의 실습을 위한 제도적 보장을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등 협력에 기인한 바가 크다. 미국변호사협회는 1969년 ‘Model Student Practice Rule’이라는 로스쿨 학생 실무 수습 규칙을 만들었고, 1970년대 말까지 30개 주 변호사회와 각급 법원은 이 표준안을 모델로 하여 학생들이 실습과정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법정변론을 허용하는 규칙을 제정하였다. 법원은 법률심인 항소심 이상의 사건 중에서 교육적 가치 있는 사건을 클리닉사건으로 지정하여 송부하고, 로스쿨의 리걸 클리닉 교수들과 학생들은 보조참가인 제도를 활용하여 사건에 참여한다. 중국 대학들에서도 일반 시민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공민대리제도를 활용하여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학내 리걸 클리닉을 통하여 법원 사건에 참여하고 활동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사법연수생에게 주어졌던 형사 국선변호제도나 민사조정 참여제도의 경험을 살려 로스쿨 2-3학년 학생에게 리걸 클리닉을 통하여 실무교수의 지도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규칙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종래 사법연수원생의 경우 2년차에 법원과 검찰 실무수습기간에 형사 국선변호인, 민사조정위원 및 검사 직무대리 등으로 활동하였다. 비록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교육의 목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관한 법원과 검찰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사건에 참여하고 대리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입법적 근거로 .종래 법원조직법은 사법연수생에 대해 법원은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고 있고(법원조직법 제72조 사법연수생), 조정위원규칙에도 사법연수원생에 관한 조항(제6조)이 있으며, 형사소송규칙<sup>46)</sup>에도 관련 규정을 두고 있었다(형사소송규칙 제14조 국

46) 형사소송규칙 제14조(국선변호인의 자격) “①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관할 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제외한다. 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 또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선변호인의 자격). 검찰청법<sup>47)</sup>도 사법연수원장의 요청에 의해 검찰총장이 사법연수생에 대해 검사 직무대리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법률과 규칙에 준하되 사법연수생과 로스쿨 학생의 차이를 고려하여 보다 더 제한적인 방법으로 법원학생실무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임상법학교육의 목적을 위한 실무활동이 현행법상 명문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로스쿨 학생과 팀을 이룬 각 로스쿨 리걸 클리닉에 국선변호의 자격을 준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교수가 변호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충분히 설득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실무교수와 담당학생이 함께 국선변호인과 같이 매년 허가를 받는 등 일정한 자격조건과 행위규칙 등을 담은 미국 법원의 학생실무수습 규칙을 대법원,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 V. 결론

리걸 클리닉은 살아있는 법학교육을 지향하고, 대학의 특성화와 교육방향, 전임교원의 전공과 전문성, 학생들의 진로와 수요 등에 따라 가능한 방법들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의 현장이다. 활성화된 리걸 클리닉 교육은 법학실무교육 뿐만 아니라 유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적이고 윤리적인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개별 대학, 교수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 국가적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등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드러난 로스쿨 간 리걸 클리닉 교육의 교육적 격차와 형해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2019년 설립된 ‘한국리걸 클리닉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돼, 우선 협력과제로서 공동 프로그램 마련, 성균관대 조정클리닉 교육방법론의 공유와 실시, 제도 개선 과제로서 법원학생실무규칙의 제정을 통한 형사 국선변호 리걸 클리닉의 조기실시를 제안한다.

미국에서 리걸 클리닉에 대한 논의는 역량강화와 제도적 개선의 단계를 넘어 리걸 클리닉의 법적 책임과 윤리적 문제라는 주제로 발전하고 있으며, 학문적, 교육적 자유의 측면에서 사건과 의뢰인을 선별하고 변론 활동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까지 깊이 들어가 있다.<sup>48)</sup> 우리도 멀지 않은 미래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까지 필요한 단계에 이르기를 희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이하 생략).”

47) 검찰청법 제32조(검사의 직무대리) “①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장이 요청하면 사법연수생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8) Robert R. Kuehn and Peter A. Joy, AN ETHICS CRITIQUE OF INTERFERENCE IN LAW SCHOOL

망한다. 지난 10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로스쿨 간 협력을 통하여 리걸 클리닉교육이 미래 법학교육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의 전기가 되는 10년이 되기를 희망한다.

(논문투고일자: 2019. 11. 30 / 심사 및 수정일자: 2019. 12. 16 / 게재확정일자: 2019. 12. 23)

**주제어** : 임상법학, 리걸 클리닉, 한국리걸클리닉협회, 윤리적 법조인 양성, 법조윤리, 법률구조  
법을 통한 사회봉사

〈참고문헌〉

- 김자영, 백경희,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리걸 클리닉에서의 국선변호활동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 Vol.27 No.4, 2016.
- 김주영, 리걸 클리닉 교육의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로스쿨 임상 법학교육의 발전방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발족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2019. 10. 19.
- 문재완, 정한중, 김인희, 로스쿨 실습과정, 한국학술정보, 2011.
- 박선아, 리걸 클리닉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Vol.31 No.1,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박선아, 리걸 클리닉 교육을 통한 윤리적 법조인의 양성- 로스쿨간 협력을 중심으로-, 로스쿨 임상법학교육의 발전방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발족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2019. 10. 19.
- 이종근, 이정훈, 문재완, 리걸 클리닉 표준모델 개발연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4.
- 이혜원, 성균관대 조정클리닉 사례, 로스쿨 임상법학교육의 발전방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발족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발제문, 2019. 10. 19.
- Robert R. Kuehn & Peter A. Joy, An Ethics Critique of Interference in Law School Clinics, 71 Fordham L. Rev. 1971 (2003).
- Peter A. Joy & Robert R. Kuehn, Lawyering in the Academy: The Intersection of Academic Freedom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Journal of Legal Education, Vol. 59, August, 2009
- 법학전문대학원평가기준(1주기),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2010. 7.
- 법학전문대학원평가기준(2주기),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2014. 11.
- 2013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역량강화(리걸 클리닉 지원) 사업 우수사례 보고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4. 3.
- 2014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역량강화(리걸 클리닉 지원) 사업 우수사례 보고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5. 3.
- CLEA STRATEGIC PLAN 2016. The 2016-2017 Survey of Applied Legal Education, Center for the Study of Applied Legal Education (CSALE).
- Clinical Legal Education Facilities : Guide to Building or Renovation Clinical Space, CLEA, An Attack on The University of Maryland Law School Clinics, CLEA, March, 27. 2010.

<국문초록>

## 리걸 클리닉 교육의 발전방안에 관한 소고

박 선 아

2019년 11년차를 맞이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도되었던 법학 교육 과제들 중 가장 새롭고 도전적인 것은 리걸 클리닉 교육이었다고 생각한다. 리걸 클리닉 교육은 실무교육을 넘어 법을 통한 사회봉사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윤리적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회를 갖는다. 법조윤리교육의 측면에서도 매우 매력적이며 법학전문대학원법에서 지향하는 로스쿨 출범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그러나 현재 리걸 클리닉 교육은 로스쿨이 직면한 여러 법학 교육의 과제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측면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변호사시험이라는 숙제 앞에서 무기력하게 유지되고 있다.

과연 3년이라는 로스쿨 교육 과정 속에서 리걸 클리닉 센터로 집중되는 임상법학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리걸 클리닉 교육이 당면한 현실을 해결하고 리걸 클리닉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리걸 클리닉 교육이 걸어온 지난 10년 동안의 과정을 “Ⅱ. 리걸 클리닉 교육 10년의 과정과 문제점”라는 목차로 개관한다. 리걸 클리닉 교육이 직면한 문제점을 ‘리걸 클리닉 교육의 형해화가 빚은 교육적 격차’의 측면에서 그 심각성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어서 “Ⅲ. 로스쿨 간 협력을 통한 리걸 클리닉 교육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IV.에서는 리걸 클리닉의 제도 개선 과제의 하나로서 ‘법원학생실무규칙’의 제정을 통한 ‘형사 국선변호 리걸 클리닉’의 실시를 제안한다. 앞으로 지난 10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로스쿨 간 협력을 통하여 활성화된 리걸 클리닉 교육이 미래 법학교육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법학교육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linical Legal Education

Park, Sun Ah\*

Clinical Legal Education was the newest and most challenging of the legal education tasks attempted at Korea's law school. It allows students to go beyond practical legal education and experience community service through law. Law students have the opportunity to develop ethical lawyers. This is very attractive in terms of legal ethics education and is consistent with the intent of Article 1 of the rule on law school.

However, clinical Legal Education, like many projects of legal education tried at law schools, has been trial and error in many respects. Over the past decade, legal and institutional challenges about legal clinic have been drift unsolved before the immediate homework of the bar exam.

What are the desirable aspects of clinical legal education in Korea? This study proposes development plans for revitalizing clinical legal education to solve the reality of lawmaker education.

First, I review the process and problems of 10 years of Korean clinical legal education (II. Clinical Legal Education of 10 Years and Challenges). I explain the problems in terms of the educational gap between law schools. Then, I suggest the ways to develop clinical legal education through cooperation between law schools(III).

Lastly, I propose the implementation of the Criminal Defense Legal Clinic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Practice Rule of court for law students(IV). I look forward to future clinical legal education as the center of law education and to become a turning point of Korean law education.

**Key Words:** *Legal Clinic, Clinical Legal Education, KCLEA, Legal Ethics, Legal Aid*

---

\*Lawschool, Hanyang University